

부산지방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568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 항소인 1. A

2. B

3.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문

담당변호사 류승용

변 론 종 결 2022. 3. 10.

판 결 선 고 2022. 3. 31.

제1 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1가단318392 판결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들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17. 4. 22.자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34,075,5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A은

14,603,806원, 피고 B, C은 각 9,735,8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8. 26. D과 사이에 D이 J단체 K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보증을 담보할 목적으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6. 7. 18. J단체 K지점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위 J단체
K지점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 원고는 2016. 9. 8. 위 J단체 K지점에게
20,106,00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에 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부산지방법원
2016차전25929호 사건)하여 ‘D은 원고에게 20,130,136원과 위 돈 중 2016. 9. 8.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D에게 2016. 11. 22. 송달되어 2016. 12. 7.
확정되었다.

라. 피고 A의 배우자이자 D, 피고 B, C의 아버지인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17. 4. 22.
사망하여 망인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D과
피고들에게 상속되었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4. 2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만이 이를
공동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인 D은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그 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 A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2/7로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등기국 2017. 6. 7. 접수 제32970호로 2017. 4.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D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망인은 상속분의 선급 취지로 D에게 상당한 금액을 증여하였고 이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므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평가액 보다 적고, D의 다른 채권자인 L 주식회사(이하 ‘L’라고 한다)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에 관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2311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연대하여 L에게 32,500,000원을 지급하고, L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피고들이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0. 3. 31. L에 32,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화해권고결정은 D의 구체적 상속분이 계산되어 그 범위에서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소는 이와 중첩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 비로소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58 판결, 2001. 10. 12. 선고 2001다49043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1. 25. 자 2012스156, 157 결정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범위는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하며,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및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나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제3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채권자인 L가 채권액 191,177,556원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2311호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 후 그 청구취지를 D에 대한 상속분인 54,005,280원으로 변경한 사실, 피고들이 망인이 D에게 67,846,945원을 상속분의 선급취지로 증여하였으므로 D의 구체적 상속분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분 가액보다 적다고 다툼 사실, 2020. 1. 22. 피고들이 연대하여 32,500,000원을 2020. 3. 31.까지 지급하고, L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사실, 피고 A 명의의 계좌에서 2020. 3. 31. 위 돈이 지급된 사실, D이 망인으로부터 45,346,945원 상당의 돈을 증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이 생전에 피고 B에게도 161,150,000원 상당의 돈을 지급한 점에 망인의 자산 규모나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성을 더하여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돈이 상속분의 선급취지로 D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 돈이 상속분의

선급취지로 D에게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21. 9.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9 지분의 가액은 81,702,810원임이 인정되고, 당심 변론종결일에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되며, 망인 사망 당시의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D, 피고 B의 특별수익분을 반영하여 D의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하면 127,584,737원(= 574,131,315원(=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가액 367,634,370원 + 피고 B의 특별수익분 161,150,000원 + D의 특별수익분 45,346,945원) × D의 상속 지분 2/9)이 된다. 결국 D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 127,584,737원 중 망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45,346,945원을 공제한 나머지 82,237,792원에 상응하는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 된다.

4) 이 사건 피보전채권 및 금액은 이 사건 지급명령상 금액인 34,075,548원이므로 다른 채권자인 L가 위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가액의 회복을 마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위 돈을 초과하는 49,202,81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D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81,702,810원 - 다른 채권자의 가액 회복 부분 32,500,000원)이 남아있으므로 그 범위가 중첩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져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은 이 사건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 당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D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D이 자신의 상속분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이를 피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D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일부 상속인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취득한 수익자에 대하여는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수익자가 취득한 지분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또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감정인 M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2021. 9. 23.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 중 D의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81,702,810원임이 인정되고, 당시 변론종결일에도 이와 같을 것으로 추인된다는 점, D의 채권자인 L가 피고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8가단302311호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위 L 주식회사에 32,500,000원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들과 D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49,202,810원(81,702,810원 - 32,5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34,075,54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피고 A은 14,603,806원(= 34,075,548원 × 3/7), 피고 B, C은 각 9,735,870원(= 34,075,548원 × 2/7)과 각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병준, 판사 안혜미, 판사 허성민

목 록

1. 부산 동구 G 대 147㎡

2. 부산 동구 G

[도로명 주소]

부산 동구 H

조표 1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주택

1층 86.94㎡

2층 86.94㎡. 끝.

